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7310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45,240,730원, 지방교육세 32,998,950원, 농어촌특별세 21,007,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2017. 2.경 '직접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었기 때문에 취득세의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 기간 미달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이는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인 401,379,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가산세 97,867,03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그 거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데에 그 추징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물의 사용승인일과는 무관하게 실제 사용기간만으로 '직접 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원고가 추징될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그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③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업무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참조), '직접 사용'의 개시시점은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참조)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이미 정립되어 있었고,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둘러싼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건물의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기간을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